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7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1(일)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7. 9(금)	담당부서	유통물류과
담당과장	김호성 과장(044-203-4380)	담 당 자	김도회 사무관(044-203-4382)

문승욱 산업부 장관, 대형유통매장 방역관리 특별점검

▸ **7.11일 오전, 롯데백화점(명동)을 점검하고,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 집중을 당부**

□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1일(일) 10시 30분, **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**에 따른 **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**(7.12)을 앞두고 서울시 중구 서양호 청장과 함께 **롯데백화점 본점(명동)**에 **방문**하여 **업계의 방역관리 상황**을 **합동점검**하고 **현장의견**을 **청취**하였다.

< 롯데백화점 방문 개요>

○ 일시 : '21. 7. 11(일), 10:30~11:05
○ 장소 : **롯데백화점 본점(명동)**
○ 참석 : **(정부)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,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
(지자체) 서울시 중구 **서양호 구청장**, **(백화점협회)** 박광혁 부회장,
(롯데백화점) 김대수 본부장, 김종환 지원부문장, 안대준 점장 등

○ 롯데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등 **정부 방역수칙 준수**는 물론, 추가적으로 식품관 등 취약시설의 특별관리, 휴가 복귀자(직영·협력업체 사원)의 방역관리 등 **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·이행**하고 있다고 설명하고,

< 롯데백화점 방역관리 주요내용 >

◇ **(정부 방역수칙 준수)** 환기 및 소독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발열체크, 거리두기 등
◇ **(자체 강화 대책)** 식품관 日 2회 방역수칙 준수점검, 폐점 후 중점 방역, 식당가/델리/카페 비대면 서비스 운영, 고객 주요 접촉 부위(ES 핸드레일, 화장실 손잡이 등) 2시간 간격 소독, 직영/동료사원 휴가 복귀자 전원 의무실 자체 진단키트 활용 선제 검사(음성시 근무, 양성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) 등

- 앞으로도 **방역당국**에 **적극 협조**하여 **집단감염**으로의 **예방·차단**에 **최선**을 **다하겠다**고 밝혔다.

□ 문승욱 장관은 **백화점의 방역상황**을 **점검하면서,**

○ **유통업계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,**

- **수도권 확산세 차단**에 **모든 역량을 집중**해야 하며, 현장에서 **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당부했다.**

○ 또한, **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** 많은 **국민이 지쳐 있지만,** 그렇다고 **자칫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**이 될 것이라고 **우려하며,**

- **백신 접종, 거리두기 개편** 등과 **관계없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.**

○ 아울러, 더운 여름철 **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**에도 **각별한 노력을** 기울여 달라고 **요청했다.**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6.24일부터 7.21일**(방역상황에 따라 연장)까지 **사회적 거리두기 개편**과 **7.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**에 따라,

○ **중대본 지침에 의거 현장 방역관리 강화**를 위해 **"유통시설 방역관리 특별점검 및 업계소통*"**을 **강화하여 시행중**이라고 밝혔다.

* **(현장점검)** 주 1회→**주말 포함 주 5회 이상, (업계소통)** 월 1회 → **주 1회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도회 사무관(☎ 044-203-43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**행사 개요**

□ 배 경 : 대형유통현장의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통해, 수도권 감염 확산세 차단 및 방역 사각지대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당부

□ 일 시 : ’21. 7. 11(일) 10:30~11:05 ※ 복장 : 평상복

□ 장 소 : 롯데백화점 본점(서울시 중구 소공동 남대문로 81)

□ 참 석 ※ 코로나19 상황 고려 참석인원 최소화

○ (정 부)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,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

○ (지자체) 서울시 중구 서양호 구청장, 최병렬 전통시장과장

○ (기 업) 롯데백화점 김대수 본부장, 김종환 지원부문장, 안대준 점장

○ (협 회) 한국백화점협회 박광혁 상근부회장

□ 시간계획(35분)

시 간	내 용	비 고
10:30~10:32 (2`)	▪ 회의 소개	중견기업정책관
10:32~10:45 (13`)	▪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황 설명 ▪ 방역 현장의견 청취	롯데백화점 참석자
10:45~10:50 (5`)	▪ 당부말씀	장관 → 구청장 順
10:50~11:05 (15`)	▪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	참석자

붙임2 **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(중대본)**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▪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▪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▪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▪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▪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▪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▪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▪중대본
기준	▪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 ▸전국: 500명 미만 ▸수도권: 250명 미만	▪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전국: 500명 이상 ▸수도권: 250명 이상	▪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전국: 1,000명 이상 ▸수도권: 500명 이상	▪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전국: 2,000명 이상 ▸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▪방역수칙 준수	▪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▪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▪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▪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▪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▪50인 이상 행사 금지	▪행사 금지
집회	▪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▪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▪50인 이상 집회 금지	▪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1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유흥시설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클럽, 나이트 8㎡당 1명)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(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 -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는 집합금지
	▪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(1~4단계)			
콜라텍 무도장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	▪시설면적 10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홀덤펍 홀덤게임장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 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2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식당 카페	▪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 시설) (1~4단계)	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▪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(3~4단계)	
노래(코인) 연습장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목욕장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실내체육시설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체육도장, GX류 4㎡당 1명)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체육도장, GX류 6㎡당 1명) 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 -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	▪22시이후 운영제한
		▪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제한(권고)	▪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▪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▪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▪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▪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▪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	
방문판매 등을 위한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직접판매 홍보관				
3그룹 시설				
구분	**1단계**	**2단계**	**3단계**	**4단계**
학원	▪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면적 4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▪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▪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	▪(관악기, 노래학원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			
	▪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			
영화관 공연장	▪좌석 띄우기없음	▪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		
		▪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	▪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독서실 스터디카페	▪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	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결혼식장	▪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▪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▪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▪친족만 허용
장례식장	▪빈소별 4㎡ 당 1명	▪빈소별 100인 미만 + 4㎡당1명	▪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1명	▪친족만 허용
이미용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놀이공원	▪입장인원 제한×	▪수용인원의 70%	▪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워터파크	▪입장인원 제한×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오락실 멀티방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상점 마트 백화점	▪판촉용 시음,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	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카지노 (내국인)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PC방	▪좌석 띄우기없음	▪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기타 시설				
구분	**1단계**	**2단계**	**3단계**	**4단계**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▪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▪(실내)수용인원의 30% (실외)수용인원의 50%	▪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▪무관중 경기
	▪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경륜·경정 경마장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	▪수용인원의 20%	▪무관중 경기
박물관·미술관 과학관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30%
실외체육시설	▪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~4단계)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 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숙박시설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▪전 객실의 3/4운영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▪전 객실의 2/3운영
파티룸 (공간대여업)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		
도서관	▪수용인원의 70%	▪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
키즈카페	▪시설면적 4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전시회·박람회	▪시설면적 4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마사지업소 안마소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국제회의 학술행사	▪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▪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4단계)		
종교시설	▪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▪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▪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▪비대면
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
학교	▪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(1~2단계)		▪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▪원격수업
	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			